#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096

발의연월일: 2025. 2. 12.

발 의 자:최보윤·김 건·서천호

안상훈 · 김상훈 · 백종헌

정성국 · 김선교 · 진종오

박수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폐업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폐업후 남은 마약류는 2023년 기준 약 108만개로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고함. 이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폐업한 후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양수할 마약류취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처리의 투명성이 확보된 가운데 신속히 폐기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해서만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부과할 뿐, 폐업 등으로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보고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리고 마약류취급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만 가능하고, 양수자가 없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마약류취급자 등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권자에

게 별도로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며, 폐업신고시 마약류 보유현황과 처분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폐기할 수도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 등이 폐업 후에 남겨진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양수할 마약류취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폐기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등).

#### 법률 제 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를 "취급하던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 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다시 시작(이하 "폐업등"이라 한다)"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다시 시작"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폐업등"을 각각 "휴업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휴업 또는 그 휴업한 업무를 다시 시작(이하 "휴업등"이라 한다)하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휴업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 3. 동물병원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수의사법」 제18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휴업등을 신고한 경우
- ③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 폐업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계획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를 "제11조(제1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거나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고 그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양도"를 "폐기·양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자격을 상실한 마약류취급자·상속인·후견인·청산인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법인"으로 본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제8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중 "제11조제1항"을 각각 "제11조제1항(제 1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4조제1호 중 "제8조제2항·제3항"을 "제8조제2항·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1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제1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제1호 중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제8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생 략)	마약류 취급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5
자격 상실자 등이 <u>마약류취급</u>	취급하던
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약류취급자에게 인계하기 전
	까지 소지하는 경우
6. • 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 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① (생	폐업 등의 신고 등) ① (현행과
략)	같음)
②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	②
출입업자등이 마약류의 취급	
또는 원료물질의 수출입·제조	
에 관한 업무를 <u>폐업 또는 휴</u>	<u>폐업 또는 휴</u>
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다	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다

시 시작(이하 "폐업등"이라 한 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폐업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 1.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 급의료업자가 「의료법」 제4 0조에 따라 의료업의 <u>폐업등</u>을 신고한 경우
- 2. 마약류소매업자가 「약사 법」 제22조에 따라 약국의 <u>폐업등</u>을 신고한 경우
  <u>선</u> 설>

<신 설>

시 시작
<u>다만, 다음 각 호에</u>
따라 휴업 또는 그 휴업한 업
무를 다시 시작(이하 "휴업등"
이라 한다)하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휴업등
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u>휴</u> 업등
2
<u> 휴업등</u>
3. 동물병원 개설자인 마약류취
급의료업자가 「수의사법」
제18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휴업등을 신고한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
출입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폐
업을 신고하려는 경우 폐업신
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
의 현황 및 처분계획을 총리령

- ③ (생략)
- ④ 허가관청의 장은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u>제3항</u>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한다.
- ⑤ 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제2 항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u>제3</u> 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에는 해당 허가 또는 지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⑤ 허가관청은 제5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 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처분을 하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명부에 그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u>⑤</u>
제4항
,
<u>⑥</u>
<u>제4항</u>
<u>⑦</u> <u>제6항</u>

제11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1 3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정보(이하 "마약류 통합정보"라한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이하"통합정보센터"라한다)로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할수있다.

- 1. ~ 7. (생략)
- ② ~ ⑦ (생 략)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①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 리자는 제외한다)가 제8조 및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취급자・상속인・후견인・청산인 및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상

제11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
터) ①
제11조(제13조제2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3조제3항
<u>.</u>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 분) ①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 분) ①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①
제1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 분) ①

속인이나 법인이 마약류취급자 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u>양도</u>하지 아 니할 수 있으며,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 재산의 관 리인·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 마재배자가 되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 여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허 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② · ③ (생 략)

제33조(마약류관리자) ① (생 제략)

② 제1항의 마약류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다른 마약류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u>폐기·양도</u>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을 준용
한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자
격을 상실한 마약류취급자·상
<u>속인·후견인·청산인 및 합병</u>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으
<u>로 본다.</u>
<u>③</u> ·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33조(마약류관리자) ① (현행과
같음)
2

자(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임 마약류관리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에게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 하게 하고 그 이유를 해당 허 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제5항에 따라 마약류관 리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 2. (생략)
-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 5. (생략)
  - 6.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6조,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 7. <u>제11조제1항</u>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

1. <u>제8조제6항</u>
2. (현행과 같음)
제63조(벌칙) ①
· 1. ~ 5. (현행과 같음)
6. 제11조제1항(제13조제2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u>다)</u>
7. 제11조제1항(제13조제2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u>다)</u>

약을 취급한 자 8. ~ 16. (생 략) ②·③ (생 략)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u>제8조제2항 · 제3항</u>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2. <u>제11조제1항</u>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3. ~ 20. (생략)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u>제8조제2항 및 제3항</u>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 10. (생략)
- ② (생 략)

8. ~ 1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64조(벌칙)
1. <u>제8조제2항 · 제4항</u>
2. <u>제11조제1항(제13조제2항에</u>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3. ~ 20. (현행과 같음)
제69조(과태료) ①
,
1. <u>제8조제2항 및 제4항</u>
2.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